

.

1.

가. : 2004 7 2

. : 2004 7 2

.

. 113 () 1 (2004 7 8)

2.

(:)

300

(1999. 2. 8, 5852) ,

18 21

(3)

50 300

.(4)

21

.(5)

30

10

(6)

3.

1 가	? .

4.

가.

.

5.

6.

7.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제266호
의결 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출년월일 2004. 7. 2
제안자 부천시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에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제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교묘히 피하면서 위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을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한다고 차수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차수의 제한과 기준적용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

2. 주요골자

-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4차 위반부터는 최고 부과금액을 부과한다”로 수정
(안 제4조 및 별표)

4 ()

[]

2.

4

•

<p>{ }</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thead><tr><th rowspan="2" style="width: 20%;"></th><th rowspan="2" style="width: 15%;"></th><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th></tr><tr><th style="width: 10%;">1</th><th style="width: 10%;">2</th><th style="width: 10%;">3</th></tr></thead><tbody><tr><td style="padding: 5px;">1. 18</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6 1 1</td><td style="text-align: center;">50</td><td style="text-align: center;">100</td><td style="text-align: center;">300</td></tr><tr><td style="padding: 5px;">2. 21</td><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6 1 2</td><td style="text-align: center;">100</td><td style="text-align: center;">200</td><td style="text-align: center;">300</td></tr></tbody></table> <p style="margin-top: 10px;">1. _____ .</p> <p>2. _____</p> <p style="margin-left: 20px;">1 _____</p> <p>_____</p> <p>_____ .</p>			(:)			1	2	3	1. 18	26 1 1	50	100	300	2. 21	26 1 2	100	200	300	<p>{ }</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4)</p> <p style="margin-left: 20px;">()</p> <p>1. ()</p> <p>2. ----- 4 _____</p> <p style="margin-left: 20px;">_____ .</p>
				(:)															
	1	2		3															
1. 18	26 1 1	50	100	300															
2. 21	26 1 2	100	200	300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제266호
의결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출년월일 2004. 7. 2

제안자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건강진단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52호)되어, 이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위반행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10일이내의 기간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함.(안 제6조)

10

,

.(6)

[]

.

1 () (“ ”) 26

.

.

2 (.) (“ ”)
) . .

3 () 1

.

1. 18

2. 21

4 () 26 1

.

5 () 26 2

21

.

1

.

6 ()

26 2

30

15

10

7 ()

8 ()

9 ()

[]

_____ (4)

		(:)		
		1	2	3
1. 18	26 1 1	50	100	300
2. 21	26 1 2	100	200	300

1. _____ .

2. _____ 4 _____ .